

일본의 ‘모노즈쿠리(ものづくり)’ 기술 지원법제에 대한 고찰

정보신청기관 : 중소기업연구원

I. 머리말

제조업은 일본경제의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¹⁾ 제조업 분야에서는 고도한 기술을 가지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의 원천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²⁾ 일본 제조업은 모든 산업에서 가장 높은 성장을 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모노즈쿠리’력이 가지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주목되었다.³⁾

‘모노즈쿠리’란 “인간사회의 이편성 향상을 목적으로 인구적으로 ‘모노’⁴⁾(형상이 있는 물체

및 형상이 없는 소프트웨어와의 결합을 포함한다)를 발상·제조·사용·폐기·회수·재이용하는 일련의 프로세스 및 그 조직적 활동이며, 결과가 사회·경제 가치의 증가에 기여할 수 있고, 인간·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⁵⁾

일본은 에도시대부터 모노즈쿠리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메이지 시대 이후 일본 제조업이 서양 제조업을 따라잡을 수 있었다고 한다.⁶⁾ 이러한 일본의 전통적인 모노즈쿠리는 ‘강한 현장을 지탱하는 팀워크·커뮤니케이션력’, ‘자연과의



- 1) 小鏞隆史, 「優れた基盤技術をもつ中小企業を支援 研究開発, 資金調達, 基盤技術高度化の環境整備の面などで認定企業を支援 中小企業のものづくり基盤技術の高度化に関する法律」時の法令, 通巻1781号(2007年3月), 16頁.
- 2) 小鏞隆史, 同上.
- 3) ものづくり政策懇談会, 「ものづくり国家戦略ビジョン(要約版)」1頁, 経済産業省. <http://www.meti.go.jp/report/data/g51128a02j.pdf> (검색일: 2012. 10. 12.).
- 4) ‘모노(もの)’는 일본어로 ‘물건’을 의미하여, ‘모노즈쿠리(ものづくり)’는 직역하면 ‘물건 만들기’라는 뜻이다.
- 5) 日本学術会議機械工学委員会生産分科会, 「21世紀ものづくり科学のあり方について」3頁, 日本学術会議. <http://www.scj.go.jp/ja/info/kohyo/pdf/kohyo-20-h64-2.pdf> (검색일: 2012. 10. 12.).
- 6) ものづくり政策懇談会, 「ものづくり国家戦略ビジョン(要約版)」2頁, 経済産業省. <http://www.meti.go.jp/report/data/g51128a02j.pdf> (검색일: 2012. 10. 12.).

공생’, ‘고수준의 대중문화 전통’이라는 장점이 있었다고 한다.⁷⁾

모노즈쿠리력이란 기술과 기능 그리고 과학의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된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세 가지 분야를 융합시키고, 새로운 제품·새로운 서비스·새로운 프로세스를 창출하여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⁸⁾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일본 모노즈쿠리 기술은 국가전략으로 논의된다. 현대사회는 원유의 가격 상승에 따라 자원을 사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 또한, 이산화탄소나 유해물질 폐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제약도 많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노동인구가 감소하는 인구적인 제약도 시작되었다.⁹⁾

모노즈쿠리 국가전략 비전은 이러한 다양한 제약 가운데 일본의 모노즈쿠리력을 활용하여 일본제품의 경쟁력과 브랜드력을 높이고, ‘탈자원발전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¹⁰⁾

이 글에서는 일본에서의 모노즈쿠리와 관련된 법제를 살펴보고, 일본 모노즈쿠리의 핵심이 되는 중소기업 제조업에 대하여 어떠한 지원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II.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진흥기본법

1. 전문

모노즈쿠리와 관련된 법률로서는 먼저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진흥기본법(ものづくり基盤技術振興基本法; 平成11年3月19日法律第2号)」을 들 수 있다. 이 법률은 1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전문, 제1장 총칙(제1조 - 제8조), 제2장 모노즈쿠리기반기술 기본계획(제9조), 제3장 기본적 시책(제10조 - 제18조), 부칙으로 구성된다.

전문에는 이 법률이 제정된 배경과 모노즈쿠리의 중요성 등이 기술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은 우리나라의 기간적 산업인 제조업의 발전을 지탱하는 것으로 생산 확대, 무역 진흥, 신산업 창출, 고용의 증대 등 국민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그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생활의 향상에 공헌하였다. 또한,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이러한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의 담당자로



7)ものづくり政策懇談会, 「ものづくり国家戦略ビジョン(要約版)」 2-3頁, 経済産業省. <http://www.meti.go.jp/report/data/g51128a02j.pdf> (검색일: 2012. 10. 12.).

8)ものづくり政策懇談会, 「ものづくり国家戦略ビジョン(要約版)」 1頁, 経済産業省. <http://www.meti.go.jp/report/data/g51128a02j.pdf> (검색일: 2012. 10. 12.).

9) 経済産業省, www.meti.go.jp/policy/mono_info_service/mono/.../e60303aj.ppt (검색일: 2012. 10. 12.).

10) 経済産業省, www.meti.go.jp/policy/mono_info_service/mono/.../e60303aj.ppt (검색일: 2012. 10. 12.).

서 그 수준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모노즈쿠리 기반기술 및 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하는 경제적, 사회적 역할이 국가의 존립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향후에도 바뀌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최근에 취업구조의 변화, 해외 지역에서의 공업화의 진정 등에 의한 경쟁조건의 변화, 기타 경제의 다양하고 구조적인 변화에 의한 영향을 받아서 국내총생산에서 점하는 제조업 비율이 저하하고, 그 쇠퇴가 걱정됨과 동시에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의 계승이 곤란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태에 대처하여 우리나라 국민경제가 국가의 기간산업인 제조업의 발전을 통해서 앞으로도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에 관한 능력을 존중하는 사회적 기운을 양성하면서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의 적극적인 진흥을 도모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이에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총합적 및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법률을 제정한다.”

2. 총칙

제1장 총칙에서는 입법목적과 용어의 정의, 기본이념,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자의 책무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진흥기본법은 제1조에서 입법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의 중요성에 착목하고 모노즈쿠리 기반기술 진흥에 관한 시책의 기본사항을 정하고 당해 기술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한다.¹¹⁾

제2조에서는 각각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하고 있으며,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이란 “공업제품의 설계, 제조 또는 수리에 관한 기술 중에서 범용성을 가지고 제조업의 발전을 지탱하는 것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한다(제2조 제1항).

‘모노즈쿠리 기반산업’이란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을 주로 이용해서 영위하는 사업이 속하는 업종이며 제조업 또는 기계수리업, 소프트웨어업, 디자인업, 기계설계업, 기타 공업제품의 설계, 제조 혹은 수리와 밀접하게 관련하는 사업활동을 하는 업종(다음 조 제1항에서 ‘제조업 등’이라고 한다)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동조 제2항).



11) 제1조: 이 법률은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이 국민경제에 있어서 해야 할 중요한 역할에 비추어 보고 근년의 경제의 다양하고 구조적인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모노즈쿠리 기본기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에 관한 시책을 총합적 및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의 수준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노즈쿠리 사업자’란 “모노즈쿠리 기반산업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동항).

그리고 ‘모노즈쿠리 노동자’란 “모노즈쿠리 사업자에 고용되는 노동자 중에서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제2조 제3항).

제3조에서는 기본이념에 대해서 규정한다.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의 진흥은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이 제조업 등에 속하는 사업에서 공급되는 제품 또는 역무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며, 그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은 모노즈쿠리 노동자에 의하여 담당되어 있는 것을 비추어 보고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에 관한 능력을 존중하는 사회적 기운을 양성하면서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제1항).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의 진흥에 있어서는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의 중심적인 담당자인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기능 및 이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습숙한 모노즈쿠리 노동자(제13조에서 ‘숙련 모노즈쿠리 노동자’라고 한다)가 부족한 것을 비추어 보고 모노즈쿠리 노동자의 확보 및 자질의 향상이 도모되어야

한다”(제2항).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의 진흥에 있어서는 모노즈쿠리 사업자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자에 의하여 접해져 있는 것을 비추어 보고 중소기업자인 모노즈쿠리 사업자(제15조에서 ‘중소사업자’라고 한다)의 경영기반의 강화 및 거래조건에 관한 불리한 보정이 도모되어야 한다”(제3항).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은 모노즈쿠리 사업자, 모노즈쿠리 노동자 또는 이에 관한 단체가 하는 자주적인 노력을 조장하는 것을 취지로 해서 강구되는 것으로 한다”(제4항).

제4조부터 제6조에 걸쳐서는 각각 당사자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한다. 제4조에서는 국가의 책무¹²⁾,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¹³⁾ 그리고 제6조에서는 모노즈쿠리 사업자의 책무¹⁴⁾에 대해서 각각 규정한다.

3. 모노즈쿠리 기반기술 기본계획

이 법률 제2장에서는 ‘모노즈쿠리 기반기술 기본계획’에 대해서 규정한다. 제2장은 제9조



- 12) 제4조: 국가는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의 진흥에 관한 총합적인 시책을 책정하여 이를 실시할 책무를 가진다.
- 13) 제5조: 지방공공단체는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의 진흥에 관해서 국가의 시책에 준거한 시책 및 그 지방공공단체 구역의 특성을 활용한 자주적인 시책을 책정하고 이를 실시할 책무를 가진다.
- 14) 제6조: 모노즈쿠리 사업자는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에 관한 자주적인 연구개발 실시에 의한 것 이외에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에 관한 능력의 적정한 평가, 직장환경의 정비개선, 기타 모노즈쿠리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함으로써 모노즈쿠리 기술기반의 수준 유지 및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제1항으로부터 제5항까지로 구성된다.¹⁵⁾ 제9조 제1항에서는 정부는 모노즈쿠리 기반기술 진흥을 위하여 기본적인 계획을 책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을 책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는 ‘모노즈쿠리 기반기술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제2항 제1호), 둘째는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제2호), 셋째는 ‘모노즈쿠리 노동자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제3호), 넷째는 ‘모노즈쿠리 기반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제4호), 다섯째는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에 관한 학습 진흥에 관한 사항’(제5호), 여섯째는 ‘기타 모노즈쿠리 기반

기술의 진흥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제6호)에 대해서 정한다.

4. 기본적 시책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진흥기본법 제3장에서는 기본적 시책에 대해서 규정한다. 제10조에서는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¹⁶⁾ 제11조에서는 모노즈쿠리 사업자와 대학 등이 제휴하여 유익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⁷⁾ 제12조에서는 모노즈쿠리 노동자의 확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업의 예방, 기타 고용의 안정(제12조 제1항 제1호), 직업능력의 개발



15) 제9조: 정부는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의 총합적 및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이하 이 조에서 ‘모노즈쿠리 기반기술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책정해야 한다.

모노즈쿠리 기반기술 기본계획은 다음사항에 대해서 정한다.

1.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2.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모노즈쿠리 노동자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
4. 모노즈쿠리 기반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에 관한 학습 진흥에 관한 사항
6. 기타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의 진흥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

정부는 모노즈쿠리 기반기술기본계획을 책정하였을 때는 지연 없이 이를 국회에 보고하고 그 개요를 공표하여야 한다.

정부는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에 관한 경제적 사회적 상황, 정부가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의 진흥에 관해서 강구한 시책의 효과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모노즈쿠리 기반기술 기본계획에 검토를 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은 모노즈쿠리 기반기술 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준용한다.

16) 제10조: 국가는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의 실시 및 그 성과의 보급, 기술의 지도, 기술자의 연수, 특허권, 기타 공업소유권에 관한 지도 및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17) 제11조: 국가는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그 성과의 이용의 촉진과 연구개발에 관한 인재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모노즈쿠리 사업자와 대학, 고등전문학교 및 대학공동이용기관(이하에서 ‘대학 등’이라고 한다)과의 유기적인 제휴가 도모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서 대학 등에서의 학술연구의 특성에 항상 배려하여야 한다.

및 향상(동 제2호), 능력의 평가, 직장환경의 개선, 복지 증진(동 제3호) 등을 도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⁸⁾ 제13조에서는 숙련한 모노즈쿠리 노동자의 기술을 계승하기 위하여 기술지도업부의 위촉 등의 시책을 강구한다.¹⁹⁾ 제14조에서는 산업집적의 추진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²⁰⁾ 제15조에서는 중소기업의 육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자의 경영기반의 강화나 거래조건에 관한 불이익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²¹⁾ 제16조에서는 모노즈쿠리 기반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보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²²⁾ 제17조에서는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을 국제사회에서 기술협력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²³⁾ 그리고 제18조에서는 국가는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의 관계자 등의 의견을 반영해서 제도를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⁴⁾

Ⅲ. 중소기업의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의 고도화에 관한 법률



- 18) 제12조: 국가는 모노즈쿠리 노동자의 확보 및 자질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노즈쿠리 노동자에 대해서 다음 사항에 관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1. 실업의 예방, 기타 고용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
 2.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검정의 충실 등에 의하여 직업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는 것
 3.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에 관한 능력의 적절한 평가, 직장환경의 정비개선, 기타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
- 19) 제13조: 국가는 숙련 모노즈쿠리 노동자(숙련 모노즈쿠리 노동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가지는 기능 및 지식의 유효한 활용과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의 계승을 도모하기 위하여 숙련 모노즈쿠리 노동자에 대한 기술지도업무의 위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 20) 제14조: 국가는 모노즈쿠리 기반산업에서의 사업활동의 효율화,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으로부터 보고 일체인 지역에서의 공업단지 등의 시설 정비, 모노즈쿠리 사업자의 교류 또는 연휴의 추진 등 모노즈쿠리 사업자의 새로운 집적 촉진 또는 기존의 집적이 가지는 기능의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국가는 모노즈쿠리 기반산업에서의 신규창업 등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노즈쿠리 사업자에 대한 시설, 인재, 정보 등의 제공, 자금의 원활한 공급 등 신규창업 등에 관한 지원 기능의 충실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 21) 제15조: 국가는 중소기업자의 경영기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새로운 설비의 설치, 기타 자본설비의 고도화, 생산관리의 합리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국가는 중소기업자의 거래조건에 관한 불리를 보정하기 위하여 그 하청 거래의 적정화에 관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 22) 제16조: 국가는 청소년을 비롯하여 널리 국민이 모든 기회를 통해서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깊이 하고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에 관한 능력을 존중하는 사회적 기운이 양성되도록 초등학교, 중학교 등에서의 기술에 관한 교육의 충실을 비롯한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에서의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에 관한 학습 진흥,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개발과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에 관한 지식 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 23) 제17조: 국가는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에 관해서 개발도상 지역에 대한 기술협력 등 국제적인 기술협력 추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 24) 제18조: 국가는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의 적절한 책정 및 실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의 관계자 등의 의견을 국가의 시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1. 총칙

2006년에는 「중소기업의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의 고도화에 관한 법률」(中小企業のものづくり基盤技術の高度化に関する法律 平成18年4月26日法律第33号; 이하, ‘중소 모노즈쿠리 고도화법’이라고 함)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의 제정 배경은 일본 경제의 기간산업인 제조업에서는 우수한 기술을 가지는 중소기업이 경제력의 원천이며,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존재의의가 재인식되고 있다.²⁵⁾ 그러나 기업 간의 거래관계가 변화하였으므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개발의 방향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졌으며 기술개발의 투자 리스크가 높아졌다고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기반기술 고도화가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²⁶⁾

중소 모노즈쿠리 고도화법은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다. 제1조에서는 목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률은 중소기업에 의한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그 성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의 고도화를 도모하여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의 강화 및 새로운 사업 창출을 통해서 국민경제의 건

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는 다음과 같다(제2조 제1항).

- 자본금의 액 또는 출자 총액이 3억 엔 이하의 회사 및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300명 이하의 회사와 개인이며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기타 업종(다음 호부터 제4호까지 기재하는 업종 및 제5호의 정령에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제1호)
- 자본금의 액 또는 출자 총액이 1억 엔 이하의 회사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의 회사 및 개인이며, 도매업(제5호의 정령에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제2호)
- 자본금의 액 또는 출자 총액이 5천만 엔 이하의 회사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의 회사 및 개인이며, 서비스업(제5호의 정령에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제3호)
- 자본금의 액 또는 출자 총액이 5천만 엔 이하의 회사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의 회사 및 개인이며, 소매업(다음의 정령에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제4호)



25) 経済産業省中小企業庁事業環境部企画課・同経営支援部技術課, 「中小企業のものづくり基盤技術の高度化に関する法律」ジュリスト, 通巻1320号(2006年10月1日) 134頁参照.

26) 経済産業省中小企業庁事業環境部企画課・同経営支援部技術課, 同上.

- 자본금의 액 또는 출자 총액이 그 업종마다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회사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그 업종마다 정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회사 및 개인이며, 그 정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제5호)
- 기업조합(제6호)
- 협동조합(제7호)
- 사업협동조합, 상공조합, 협동조합연합회, 기타 특별한 법률로 설립된 조합 및 그 연합회이며, 정령으로 정하는 자(제8호)

2. 지침의 책정

이 법률에서는 ‘특정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모노즈쿠리 기반기술 진흥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반기술 중에서 당해 기술을 사용해서 하는 사업활동의 상당부분이 중소기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중소기업자가 그 고도화를 도모하는 것이 우리나라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의 강화 또는 새로운 사업의 창출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경제산업대신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항).

‘특정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을 지정함에 있어

서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견을 듣고 조사하였다.²⁷⁾ 처음에는 17가지의 기술이 지정되었으나²⁸⁾ 2012년 10월 현재 22개로 늘었다.²⁹⁾ 특정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에는, 짜넣는 소프트웨어에 관한 기술, 금형(金型)(금속 가공공구)에 관한 기술, 냉동 공기조절에 관한 기술, 전자부품·디바이스의 실장(實裝)에 관한 기술, 플라스틱 성형(成形) 가공에 관한 기술, 분말 야금(冶金)에 관한 기술, 용사(溶射)·증착(蒸着)에 관한 기술, 단조(鍛造)에 관한 기술, 동력전달에 관한 기술, 부재 체결에 관한 기술, 주조(鑄造)에 관한 기술, 금속압축 가공에 관한 기술, 위치결정에 관한 기술, 절삭(切削) 가공에 관한 기술, 섬유가공에 관한 기술, 고기능화학합성에 관한 기술, 열처리에 관한 기술, 도장(塗裝)에 관한 기술, 도금에 관한 기술, 발효에 관한 기술, 진공(眞空)에 관한 기술 등이 지정된다.³⁰⁾ 당해 기술은 필요에 따라 재검토를 한다.³¹⁾

그리고 ‘특정연구개발 등’이란 특정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하는 것 및 그 성과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3항).

제3조에서는 중소기업의 특정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의 고도화에 관한 지침을 책정한다. 이는 중요한 모노즈쿠리의 기반이 되는 기술에 대해서 기업의 니즈나 과제를 정리하여 모노즈쿠리



27) 小鏞隆史, 前掲, 19頁.

28) 小鏞, 同上.

29) 中小企業庁. <http://www.chusho.meti.go.jp/keiei/sapoin/portal/index.htm> (검색일: 2012. 10. 8.).

30) 中小企業庁. <http://www.chusho.meti.go.jp/keiei/sapoin/portal/index.htm> (검색일: 2012. 10. 8.).

31) 小鏞, 前掲, 19頁参照.

중소기업이 목표로 할 전략을 지침으로 정리한 것이다.³²⁾ 구체적으로 조문을 보면, 경제산업대신은 중소기업의 특정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의 고도화에 관한 지침을 정해야 한다(제3조 제1항). 특정 모노즈쿠리 기반기술 고도화 지침에서는, 특정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의 고도화 전반에 걸친 기본적인 사항(제3조 제2항 제1호), 개개의 특정 모노즈쿠리 기반기술마다 달성해야 할 고도화 목표(제2호), 개개의 특정 모노즈쿠리 기반기술마다 고도화 목표의 달성에 이바지할 특정 연구개발 등의 실시방법(제3호), 개개의 특정 모노즈쿠리 기반기술마다 특정연구개발 등을 실시함에 있어서 배려해야 할 사항(제4호) 등이다.

이러한 특정 모노즈쿠리 기반기술 고도화 지침은 시장의 니즈를 염두에 두고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대된다.³³⁾

제4조부터 제5조에 걸쳐서는 특정연구개발 등 계획에 대해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자가 특정 모노즈쿠리 기반기술 고도화지침에 따라 연구개발을 함에 있어서 특정연구개발 등 계획을 작성해서 경제산업대신의 인정을 받

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³⁴⁾

3. 구체적 시책

제6조에서는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의 연구개발 지원에 대해서 규정한다. 조문에서 “국가는 인정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특정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다”라고 규정한다(제6조). 특정연구개발등계획이 인정을 받으면 설비자금과 장기운전자금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중소기업 금융금고로부터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³⁵⁾ 또한, 일본 경제를 끌어 나가는 중요기반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기반기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과 유저(user)기업,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참여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략적 기반기술 고도화 지원 사업으로 예산조치를 한다.³⁶⁾

제7조에서는 중소기업 신용보험법의 특례에 대해서 규정한다. 이는 지원대상인 중소기업자의 연구개발 등에 대하여 자금조달이 잘 조달되도록 중소기업신용보증협회에 대하여 중소기업 금융금고의 신용보험에 관한 특례를 두었다.³⁷⁾



32) 小鑑, 同上.

33) 小鑑, 同上, 19-20頁.

34) 竹永祥久, 「[經濟産業] 中小企業のものづくり基盤技術の高度化に関する法律」 法令解説資料総覧, 293号(2006年6月) 22頁参照.

35) 經濟産業省中小企業庁事業環境部企画課・同経営支援部技術課, 前掲, 135頁参照.

36) 經濟産業省中小企業庁事業環境部企画課・同経営支援部技術課, 同上.

37) 經濟産業省中小企業庁事業環境部企画課・同経営支援部技術課, 同上.

제8조에서는 중소기업 투자육성 주식회사법의 특례에 대해서 규정한다.³⁸⁾ 이는 특정연구개발 등 계획을 인정받은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등을 함에 있어서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가 투자사업이나 육성사업을 실시하게 하는 특례 조치를 강구하여 중소기업자의 자본조달을 지원하는 것이다.³⁹⁾

제9조에서는 특허료의 특례에 대해서 규정한다.⁴⁰⁾ 이는 특정연구개발 등 계획의 인정을 받은 중소기업자의 성과에 대해서 특허를 권리화할 경우에 심사청구료를 감면하거나 특허료를 감면 또는 유예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⁴¹⁾

위와 같은 법률상의 지원 이외에도 다양한 사

업을 통해서 모노즈쿠리 중소기업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는 고도한 기술을 가지는 모노즈쿠리 중소기업(상류)과 시장의 니즈를 파악하여 최종제품을 제조하는 중견·대기업(하류)을 연결시키는 상류·하류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川上・川下ネットワーク構築支援事業)을 지원하고 있다.⁴²⁾

둘째는 젊은 세대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의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학교와 연휴해서 학생에게 중소기업의 매력을 가르치거나 중소기업 종업원에 대해서도 전문학교에서 교육시키는 고전 등 활용 중소기업 인재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있다.⁴³⁾



38) 제8조 제1항: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는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昭和38年法律第101号) 제5조 제1항 각호에서 기재하는 사업 이외에 다음에 기재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자가 인정계획에 따라서 특정연구개발 등을 하기 위하여 자본금액이 3억 엔을 넘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 및 당해 인수에 관한 주식 보유
2. 중소기업자 중에서 자본금액이 3억 엔을 넘는 주식회사가 인정계획에 따라 특정연구개발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금 조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행할 주식, 신주예약권(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것을 제외한다.) 또는 신주예약권부사채 등(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 제5조 제1항 제2g에 규정된 신주예약권부사채 등을 말한다. 이하 같음.)의 인수 및 당해 인수에 관한 주식, 신주예약권(그 행사에 의하여 발행되거나 이전된 주식을 포함한다.) 또는 신주예약권부사채등(신주예약권부사채등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의 행사에 의하여 발행되거나 이전된 주식을 포함한다.)의 보유

39) 經濟産業省中小企業庁事業環境部企画課・同経営支援部技術課, 前掲.

40) 제9조: 특허청 장관은 인정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특정연구개발 등의 성과에 관한 특허발명(당해 인정계획에서의 특정연구개발 등의 실시기간의 종료일로부터 기산해서 2년 이내에 출원된 것으로 한한다) 또는 당해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정계획에 따라 승계한 특허권 혹은 특허를 받을 권리에 관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법(昭和34年法律第121号)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년부터 제10년까지의 각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당해 특정연구개발 등을 하는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정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특허료를 경감 혹은 면제하여 또는 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특허청 장관은 인정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특정연구개발 등에 성과에 관한 발명(당해 인정계획에서의 특정연구개발 등의 실시기간에 따라 이루어지는 특정연구개발 등의 실시기간의 종료일로부터 기산해서 2년 이내에 출원된 것으로 한한다) 또는 당해 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정계획에 따라 승계한 특허를 받을 권리에 관한 발명에 관한 자기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자가 당해 특정연구개발 등을 할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법 제19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출원심사의 청구 수수료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41) 經濟産業省中小企業庁事業環境部企画課・同経営支援部技術課, 前掲, 135-136頁参照.

42) 經濟産業省中小企業庁事業環境部企画課・同経営支援部技術課, 136頁参照.

43) 經濟産業省中小企業庁事業環境部企画課・同経営支援部技術課, 同上.

셋째는 기업과 학교가 제휴해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지원하는 제조중핵인재육성사업을 통해서 지원한다.⁴⁴⁾

넷째는 기계류 설비의 설치나 전문가를 충실화시키는 등, 중소기업에의 계량표준기반강화사업이 있다.⁴⁵⁾

다섯째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정보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화를 진전시키는 중소기업 기반기술 계승지원 사업이 있다.⁴⁶⁾

여섯째는 중소기업의 기술은 중요한 지적재산이므로 그것을 잘 활용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지적재산 계발보급 사업이 있다.⁴⁷⁾

그리고 일곱째는 기술개발의 역제가 일어나는 거래관행에 대해서는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거래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여 거래관행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⁴⁸⁾

IV. 맺음말

일본에서는 에도 시대로부터 모노즈쿠리의 전통과 기술이 계승되었으며, 현재도 많은 장인이 세계적으로 봐도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

다. 이러한 일본의 독자적인 모노즈쿠리의 전통과 기술을 활용해서 국가전략으로 하려고 하는 논의도 보이고 있으며,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진흥 기본법」이나 「중소기업의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의 고도화에 관한 법률」도 이러한 국가전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의 모노즈쿠리의 전통과 기술에 착목해서 국가전략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개선해야 할 점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모노즈쿠리 장인에 대한 위상이 현대사회에서는 저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현대사회에서는 공장에 의한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며 제품을 저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모노즈쿠리 장인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예전보다도 저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인에 대한 사회적 위상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경제 불황에 따라 많은 젊은이들이 가급적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희망할 경향이 있다. 따라서 아무리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젊은 세대가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피하지 않도록 중소기업의 경영을 앞으로도 지원할



44) 經濟産業省中小企業庁事業環境部企画課・同経営支援部技術課, 同上.

45) 經濟産業省中小企業庁事業環境部企画課・同経営支援部技術課, 同上.

46) 經濟産業省中小企業庁事業環境部企画課・同経営支援部技術課, 同上.

47) 經濟産業省中小企業庁事業環境部企画課・同経営支援部技術課, 同上.

48) 經濟産業省中小企業庁事業環境部企画課・同経営支援部技術課, 同上.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는 제조업에 대한 관심이 낮다는 점이다. 특히 긴 전통과 높은 기술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강한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나 강한 인내를 필요로 하면서도 모노즈쿠리 장인에 대한 수요가 그다지 높지 않다면 의욕을 유지하기 어렵다. 전

통과 기술이 확실히 젊은 세대에 계승되기 위해서도 제조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미즈시마 레오(水島玲央)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참고문헌

문헌

- 경제산업성 중소기업사업환경부企画課・同経営支援部 技術課, 「中小企業のものづくり基盤技術の高度化に関する法律」ジュリスト, 通卷1320号(2006年10月1日).
- 小鐘隆史, 「優れた基盤技術をもつ中小企業を支援 研究開発, 資金調達, 基盤技術高度化の環境整備の面などで認定企業を支援 中小企業のものづくり基盤技術の高度化に関する法律」時の法令, 通卷178号(2007年3月15日).
- 竹永祥久, 「[経済産業] 中小企業のものづくり基盤技術の高度化に関する法律」法令解説資料総覧, 293号(2006年6月).

웹사이트

- 경제산업성, www.meti.go.jp/policy/mono_info_service/mono/.../e60303aj.ppt (검색일: 2012. 10. 12.).
- 중소기업청, <http://www.chusho.meti.go.jp/keiei/sapoin/portal/index.htm> (검색일: 2012. 10. 8.).
- 日本学術会議機械工学委員会生産分科会, 「21世紀ものづくり科学のあり方について」日本学術会議. <http://www.scj.go.jp/ja/info/kohyo/pdf/kohyo-20-h64-2.pdf> (검색일: 2012. 10. 12.).
- ものづくり政策懇談会, 「ものづくり国家戦略ビジョン(要約版)」, 経済産業省, <http://www.meti.go.jp/report/data/g51128a02j.pdf> (검색일: 2012. 10. 12.).